

## 국제협력진흥기금운영위원회규정

제 정 2006. 3.  
개 정 2013. 1.  
개 정 2024. 1.

### 제 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이 위원회는 우송대학교 국제협력진흥기금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위원회는 우송대학교의 국제협력 진흥을 위한 기금(이하 “국제협력기금”이라 한다)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위원회의 사무소는 우송대학교 교내에 둔다. [개정 2013.1.1.]

제4조 (사업) 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국제협력기금의 모금 및 관리
2. 국제협력기금 모금과 관련된 홍보활동
3. 국제협력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
4. 국제협력 연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
5. 국제협력에 따른 교환학생 장학금 지원
6.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교육 기본 시설비 지원
7. 기타 국제협력기금 조성과 관련된 사업

### 제 2장 재정 및 회계

제5조 (기금의 조달 방법 등) ①이 위원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는 우송대학교 국제협력기금으로 조성된 출연금과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수익으로 충당한다.

②우송대학교 국제협력기금은 국제협력 협약에 의하여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 등록금의 10%의 범위 내에서 대학 예.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 [개정 2013.1.1.]

제6조 (국제협력기금의 관리) ①독지가가 출연한 국제협력기금은 별지1호 양식의 기부증서에 의하여 기부채납 받아 우송대학교 국제협력진흥기금위원회의 계정에 수입조치 한다.

②국제협력기금의 유지, 보존,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7조 (회계원칙) ①이 위원회의 회계는 우송대학교 재무규정 및 회계원칙에 따른다.

②이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우송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8조 (임직원의 보수) 이 위원회의 임.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### 제 3장 위 원 회

제9조 (위원회의 구성) ①이 위원회는 본교 교직원, 동문, 및 산업체 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

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부총장, 국제교류처장,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 [개정 2013.1.1.][개정 2024.1.18.]

③ 고문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본 대학 또는 해외 자매대학 총장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한 자로 하되,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.

④ 위원장은 행정부총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감사는 위원회에서 1명을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감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⑥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#### 제10조 (임원) ①이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위원장 1명
2. 고문 약간 명
3. 감사 1명
4. 간사 1명
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11조 (회의) ①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12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
1.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
2. 국제협력기금 증식에 관한 사항
3. 국제협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4. 국제협력기금의 예산, 결산 및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
6. 위원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7. 임원의 위촉 및 임명에 관한 동의
8.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 제 4장 보 칙

제13조(준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우송학원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고 일반적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.

제14조(경과규정) 이 규약의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1.18.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